

장성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계속비사업 변경 승인(안)

의안 번호	---
----------	-----

제출년월일 : 2022. 11. . .

제 출 자 : 장성군수

□ 제안이유

장성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농촌마을의 계획적인 개발을 통하여 인구 유지 및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2016년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사업대상지로 선정되어 2017년도 지방재정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계속비 사업으로 의결을 받아 2022년 완료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도로정비사업 보상협의 지연으로 금년내에 사업완료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2023년까지 연장하고자 함.

□ 법적근거 : 지방재정법 제42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사업은 필요한 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서 여러 해에 걸쳐 지출할 수 있음

□ 주요내용

- 계속사업비 : 5,868백만원(국비 4,108, 군비 1,760) ⇒ 변경없음
- 계속비기간 : 당초 - 2017 ~ 2022(6년) / 변경 - 2017 ~ 2023(7년)

□ 변경사유

- 도로정비사업 보상협의 지연으로 금년내 사업완료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계속비사업 기간을 변경하고자 함.

기 간	사업비 (백만원)	내 용
계	5,868	
2017년	474	• 기본계획 용역, 지역역량강화
2018년	714	• 실시설계 용역, 지역역량강화
2019년	1,931	• 기본계획 승인, 지역역량강화
2020년	1,753	• 홍보관(청운1) 및 커뮤니티센터(청운3) 건립, 지역역량강화
2021년	996	• 실버케어문화관(청운2) 건립, 도로정비, 지역역량강화
2022년	-	• 실버케어문화관(청운2) 건립, 도로정비, 지역역량강화
2023년	-	• 도로정비, 지역역량강화